

의안번호	제 호	의결사항
의결 연월일	2021. . . (제 회)	

정 보 통 신 망 이 용 촉 진 및 정 보 보 호
등 에 관 한 법 률 시 행 령
일 부 개 정 령 안

제 출 자	국무위원 ○○○ (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 관)
제출 연월일	2021. . .

법제처 심사 전

1. 의결주문

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.

2. 제안이유

기존 정보보호 최고책임자의 획일적 지위(임원급)를 기업규모에 따른 임직원으로 세분화하고, 정보보호 필요성이 큰 중기업 이상으로 신고 및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등 유사 정보보호 관련 업무도 수행 할 수 있도록 겸직제한 완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「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」 제45조의3이 개정(법률 제18201호, 2021.6.8. 공포)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기 위해 시행령을 정비하려는 것임

3. 주요내용

가. 기업규모별 정보보호 최고책임자 지위(임원급) 기준 구체화(안 제36조의7제1항 신설)

- 겸직제한 대상 기업*을 제외한 중기업 이상은 부서장급 정보보호 최고책임자도 지정 가능하도록 개정

* 직전 사업연도 말 자산총액 5조원 이상이거나, 정보보호 관리체계(ISMS) 의무대상 중 자산총액 5천억 원 이상인 자

나. 정보보호 최고책임자 신고의무 제외대상자 명확화(안 제36조의7제2항 개정)

- 정보보호 필요성이 큰 ‘중기업’ 이상으로 정보보호책임자를 신고하도록 하여 전기통신사업자 중 소기업과 단순 안내·홍보위주의 홈페이지만 운영하고 있던 제조업 등은 신고의무에서 제외
- 다. “신고의무 없는 자”의 경우 별도의 지정이 없는 경우 대표이사로 간주한다는 규정을 마련하여 법적 혼란 방지함(안 제36조의7제3항 신설)
- 라. 정보보호 최고책임자 신고 기한을 당초 90일에서 180일로 연장(안 제36조의8 개정)
- 마. 겸직금지의무에 대한 과태료 규정이 신설되어 중앙전파관리소에 행정처분에 대한 권한 위임 규정 마련(안 제70조제1항제2호, 제2항제1호, 제2항제8호 개정)
- 바.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정보보호 최고책임자의 정보보호 역량 강화를 지원할 위탁근거 마련(안 제70조제5항 신설)
- 사. 정보보호 최고책임자 지정신고의무 위반 과태료 완화 및 겸직금지의무 위반 시 과태료 부과 신설(안 제74조 별표9)

4. 주요토의과제

없 음

5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

라. 기 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2) 입법예고 전

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

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6조의7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제4항부터 제6항까지로 하고, 같은 조 제1항을 제2항으로 하며, 같은 조에 제1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① 법 제45조의3제1항 본문에서 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임직원급의 정보보호 최고책임자”란 다음 각 호의 구분을 따른다.

1.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: 사업주 또는 대표이사
2. 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: 이사(「상법」 제401조의2 제1항제3호에 따른 자 또는 같은 법 제408조의2에 따른 집행임을 포함한다)
3.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: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
 - 가. 사업주 또는 대표이사
 - 나. 이사(「상법」 제401조의2제1항제3호에 따른 자 또는 같은 법 제408조의2에 따른 집행임을 포함한다)

다. 가목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직접 지시를 받는 정보보호관련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의 장

③ 법 제45조의3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자가 정보보호 최고책임자를 지정하지 아니한 경우 사업주 또는 대표이사를 정보보호 최고책임자로 지정한 것으로 본다.

제36조의7제2항(종전의 제1항) 각 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, 같은 조 제6항(종전의 제4항)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“제3항”을 “제5항”으로, “제2항”을 “제4항”으로 한다.

1. 자본금이 없거나 자본금이 1억원 이하인 자
2. 「중소기업기본법」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
3. 「중소기업기본법」 제2조제2항에 따른 중기업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자

가. 「전기통신사업법」 제2조제8호에 해당하는 전기통신사업자

나. 「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」 제47조제2항에 따라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을 받아야 하는 자

다. 「개인정보보호법」 제30조제2항에 따라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공개하여야 하는 개인정보처리자

라. 「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」 제12조에 따라 신고를 해야 하는 통신판매업자

제36조의8 중 “90일”을 “180일”로 한다.

제70조제1항제2호 중 “하는 자”를 “하는 자 및 같은 조제3항에 따라 같

은 조 제4항의 업무 외 다른 업무를 겸직할 수 없도록 하여야 하는 자”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제1호 중 “신고”를 “신고 및 겸직금지 업무 위반에 대한 행정조치”로 하며, 같은 항 제8호 중 “법 제53조”를 “법 제45조의3 및 법 제53조”로 하고,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47조의4제2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조치로서 정보보호 최고책임자의 사고대응 지원 및 정보보호를 위한 협력활동을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위탁한다.

별표 9 제1호나목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단, 적발된 날로부터 3년 이전에 한 부과처분은 가중처분의 차수를 정할 때에 반영하지 않는다.

별표 9 제2호카목 중 “정보보호 최고책임자의 지정을”을 “영 제36조의7 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자가 정보보호 최고책임자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임직원으로 지정하지 아니하거나”로 하고, 같은 호 위반행위 카목의 위반횟수별 과태료 금액의 1회란 “1,000”을 “750”으로 하며, 같은 호 위반행위 카목의 위반횟수별 과태료 금액의 2회란 “2,000”을 “1,500”으로 하고, 같은 호 타목부터 구목까지를 각각 과목부터 누목까지로 하며, 같은 호에 타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타. 법 제45조의3제3항을 위반하여 정보보호 최고책임자로 하여금 같은 조 제4항의 업무 외의 다른 업무를 겸직하게 한 경우	법 제76조제1항제6호의3	1,000	2,000	3,000
---	----------------	-------	-------	-------

별표 9 제2호파목의 근거 법조문란 “법 제76조제1항제6호의3”을 “법 제7

6조제1항제6호의4”로 하고, 같은 호 누목4) 중 “제2호 및 제6호의2”를 “제2호, 제6호의2 및 제6호의3”으로 하며, 같은 호 누목을 두목으로 하고, 같은 표의 비고 중 “버목부터 퍼목까지의 규정(저목과 커목”을 “서목부터 허목까지의 규정(처목과 터목”으로 한다.

부 칙

이 영은 2021년 12월 9일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36조의7(정보보호 최고책임자의 지정 및 겸직금지 등) <신설></p>	<p>제36조의7(정보보호 최고책임자의 지정 및 겸직금지 등) ① 법 제45조의3제1항 본문에서 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임직원급의 정보보호 최고책임자”란 다음 각 호의 구분을 따른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: 사업주 또는 대표이사 2. 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: 이사(「상법」 제401조의2제1항제3호에 따른 자 또는 같은 법 제408조의2에 따른 집행임을 포함한다) 3.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: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가. 사업주 또는 대표이사 나. 이사(「상법」 제401조의2제1항제3호에 따른 자 또는 같은 법 제408조의2에 따른 집행임을 포함한다) 다. 가목에 해당하는 자로부

① 법 제45조의3제1항 단서에서 “자산총액, 매출액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”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.

1. 「전기통신사업법」 제22조 제4항제1호에 따라 부가통신 사업을 신고한 것으로 보는 자
2. 「소상공인기본법」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
3. 「중소기업기본법」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[「전기통신사업법」 제2조제8호에 따른 전기통신사업자와 타인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집적된 정보통신시설을 운영·관리하는 사업자(이하 “집적정보통신시설사업자”라 한다)는 제외한다]으로서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간의

터 직접 지시를 받는 정보보호 관련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의 장

② 법 제45조의3제1항 단서에서 “자산총액, 매출액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”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.

1. 자본금이 없거나 자본금이 1억원 이하인 자
2. 「중소기업기본법」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
3. 「중소기업기본법」 제2조제2항에 따른 중기업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자
 - 가. 「전기통신사업법」 제2조 제8호에 해당하는 전기통신사업자
 - 나. 「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」 제47조제2항에 따라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을 받아야 하는 자

일일평균 이용자 수가 100만 명 미만이고 전년도 정보통신 서비스 부문 매출액이 100억 원 미만인 자

<신 설>

② (생략)

③ (생략)

④ 제3항에 따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지정·신고해야 하는 정보보호 최고책임자는 제2항에 따른 자격 요건을 충족하고, 상근하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. 이 경우 정보보호 또는 정보기술 분야의 업무는 「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」 별표 1 비고 제3호 및 제4

다. 「개인정보보호법」 제30조제2항에 따라 개인정보처리방침을 공개하여야 하는 개인정보처리자

라. 「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」 제12조에 따라 신고를 해야 하는 통신판매업자

③ 법 제45조의3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자가 정보보호 최고책임자를 지정하지 아니한 경우 사업주 또는 대표이사를 정보보호 최고책임자로 지정한 것으로 본다.

④ (현행 제2항과 같음)

⑤ (현행 제3항과 같음)

⑥ 제5항-----

----- 제4항-----

호에 따른 업무를 말한다.

1. 2. (생략)

제36조의8(정보보호 최고책임자의 신고 방법 및 절차) 법 제45조의3제1항에 따라 정보보호 최고책임자를 지정하고 신고해야 하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신고의무가 발생하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정보보호 최고책임자 지정신고서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.

제70조(권한의 위임·위탁)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65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법 제76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·징수의 권한을 중앙전파관리소장에게 위임한다.

1. (생략)

2. 법 제45조의3제1항에 따라 정보보호 최고책임자를 지정하고 신고하여야 하는 자

-----.

1. 2. (현행과 같음)

제36조의8(정보보호 최고책임자의 신고 방법 및 절차) -----

180일 -----

-----.

제70조(권한의 위임·위탁) ① --

-----.

1. (현행과 같음)

2. -----

----- 하는 자 및 같은 조제3항에 따라 같은 조제4항의 업무 외 다른 업무를 겸

<p>3. (생략)</p> <p>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65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중앙전파관리소장에게 위임한다.</p> <p>1. 법 제45조의3에 따른 정보보호 최고책임자 지정의 <u>신고</u></p> <p>2. ~ 7. (생략)</p> <p>8. <u>법 제53조</u>부터 제61조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하기 위한 법 제64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자료제출 요구와 검사</p> <p>9. (생략)</p> <p>③·④ (생략)</p> <p><u><신설></u></p>	<p><u>직할 수 없도록 하여야 하는 자</u></p> <p>3.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----- ----- ----- -----.</p> <p>1. ----- ----- <u>신고</u> <u>및 검직금지 업무 위반에 대한 행정조치</u></p> <p>2. ~ 7. (현행과 같음)</p> <p>8. <u>법 제45조의3 및 법 제53조</u>- ----- ----- ----- ---</p> <p>9. (현행과 같음)</p> <p>③·④ (현행과 같음)</p> <p>⑤ <u>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47조의4제2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조치로서 정보보호 최고책임자의 사고대응 지원 및 정보보호를 위한 협력활동을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위탁한다.</u></p>
---	--

< 의안 소관 부서명 >

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사이버침해대응과	
연 락 처	(044) 202 - 6464